

목포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267
----------	-----

I. 제안이유

- 통·반장의 임무 및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II. 주요내용

- 가. 통·반의 구성범위 현실화(안 제3조)
 - 반의 구성은 “20내지 30가구”에서 “30가구 이상”으로 구성
 - 통의 구성은 “4반내지 6개반”에서 “5개반 이상으로 하되, 자연부락 등 지역 실정에 따라 4개반 이하”로 구성
- 나. 통·반장의 임무 중 반적부 정리에 관한 내용 삭제(안 제7조 제3호)
- 다.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전환
(안 제9조 제2항)
- 라. 반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 구체화(안 제9조의 2)
- 마. 통장의 임명권자인 동장에게 통장의 직무상 정보공개 가부결정권 부여(안 제 11조)
- 바. 통·반장에게 제공하는 편의 중 적십자회비, 폐기물수집수수료의 면제규정 삭제(안 제12조)

III. 검토의견

- 목포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·반의 구성범위를 현실화 하고
- 통·반장의 임무 중 유명무실한 반적부정리에 의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
- 통장의 임명권자인 동장에게 통장의 직무상 정보공개 가부결정권을 부여하여 통·반장이 직무상 취득한 행정정보를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
- 통·반장에게 제공하는 편의사항 중 적십자회비와 폐기물수집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현실에 부합되는 안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